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67호  
2024. 7. 26.

- |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
- | 교육시설 BTL사업 공사비 문제와 발전 방향
-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현실 고려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필요

- 취업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청년 기술인에게 과도한 부담 -

### ■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인지 시점, 취업 후가 대부분... 취업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sup>1)</sup>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음.
- 최근 4년간 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과태료 유예 만료인 2021년에는 교육 이수생이 36만 1,202명(전체 건설기술인의 39.2%)으로 다른 해에 비해 교육 이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에서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이 과반수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과태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 최근 4년간 교육 시기별/목적별 교육 이수 비중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기본교육	31,969	27.4	51,296	28.6	104,559	28.9	44,057	20.3
최초교육	28,297	24.3	53,854	30.0	136,056	37.7	73,380	33.8
승급(특급)	8,230	7.1	11,233	6.3	13,354	3.7	13,720	6.3
승급(고급)	5,514	4.7	8,648	4.8	11,560	3.2	13,157	6.1
승급(중급)	6,795	5.8	11,160	6.2	15,986	4.4	18,092	8.3
계속	23,612	20.2	29,406	16.4	50,654	14.0	37,247	17.2
타법령	9,075	7.8	10,742	6.0	15,329	4.2	10,605	4.9
기타(구분 불분명)	3,132	2.7	3,251	1.8	13,704	3.8	6,848	3.2
전체	116,624	100.0	179,590	100.0	361,202	100.0	217,106	100.0

원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용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3.11), "건설기술인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 검토 연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1)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50만원.

- 실제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직무교육 미이수 시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회사를 취업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sup>2)</sup>
  - 승급교육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계속교육이 ‘해당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의 이수 시점은 교육의 당사자인 기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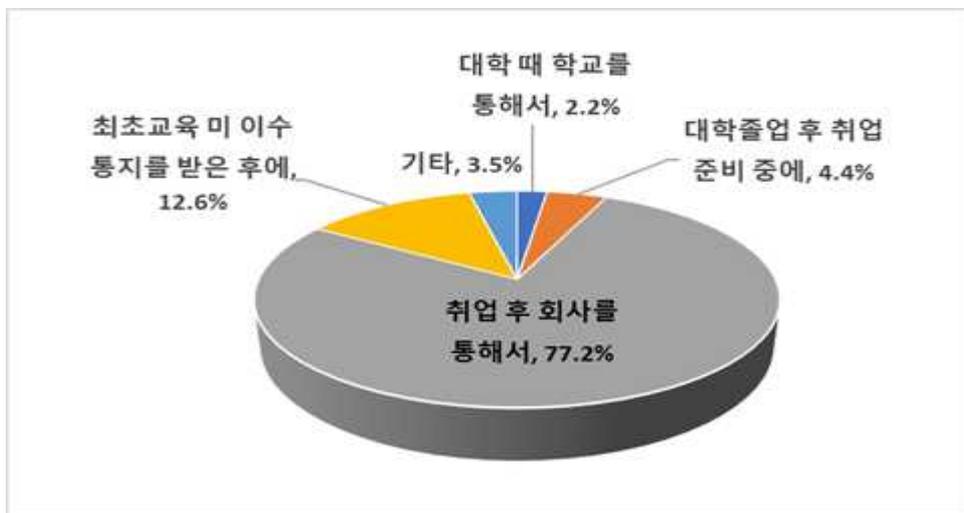
<표 2> 건설기술인 분야별·등급별 교육·훈련

구분	교육	최초교육	교육·훈련 이수 시기
공통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최초교육 : 최초로 설계·시공, 건설사업 관리,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급·고급 : 105시간 이상 - 중급·초급 :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그림 1> 참조)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77.2%가 ‘취업 후 회사를 통해서’, 12.6%가 ‘최초교육 미이수 통지를 받은 후에’, 4.4%가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 중에’, 3.5%가 ‘기타’라고 답함.

<그림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인지 시점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 건설기술인 교육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 협·단체 등)가 대상 자문회의에서도 기본교육 이수 시점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시하였음.

## ■ 연간 약 560억 규모 법정직무교육 시장,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이뤄져야

- 코로나19 이후 법정직무교육 이수자는 20%를 상회해 2022년 기준 건설기술인의 22.6%가 교육을 이수함.
  - 2021년의 경우 원격교육 수요 증가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의 만료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39.2%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건설기술인 교육 참여 비중(취업/미취업 구분)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건설기술인	854,922	884,036	922,258	961,583
교육참여 비중(%)	13.6%	20.3%	39.2%	22.6%

주 : 교육이수는 동일 기술인이 복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각기 1번으로 산출하여 기술인별 중복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용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3.11), "건설기술인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교육기관 총량 검토 연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향후에도 전체 건설기술인의 20% 내외에서 교육이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기술인 법정직무 교육비는 과목당 최소 14만원~최대 45만원(출퇴근 집체교육 기준)<sup>3)</sup>으로 고용보험지원금에서 일부를 환급을 받고 있음. 통상적으로 교육비 2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60억원(대략 20만명이 교육 이수를 한다고 가정 시) 규모의 시장임.
- 그러나 교육 당사자인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은 채 제7차 건설기술진흥법 기본계획에서는 직무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관리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음.
- 법정직무교육은 건설기술인이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교육이라 할 수 있음. 건설기술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라는 규제에 머물기보다는 실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를 위한 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함. 또한, 건설업으로 진입하려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를 통한 법정직무교육 홍보 등의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3)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公示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비를 기준으로 함. 온라인 교육과정의 경우 비환급으로 분류되어 제외함.

## 교육시설 BTL사업 공사비 문제와 발전 방향

- 물가변동으로 사업 위기 확대, 시설 성능을 고려한 공사비 산정 필요 -

### ■ 교육시설 BTL사업 현황

- 교육시설 BTL 사업은 정부의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해옴.<sup>4)</sup>
  -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하 그린스마트스쿨)’의 추진계획을 발표(’21.8)했으며, 이후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이 크게 증가함.
- 하지만, 2023년 신규고시된 그린스마트스쿨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올해 재고시되었고, 현재 건설단계 종료 시점에 있는 사업시행자들은 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고려하는 등 BTL사업의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직산초 외 4교’ BTL사업은 공사비가 매우 부족해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4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조정안을 냈.<sup>5)</sup>

### ■ 최근 급등한 물가변동이 가져온 BTL사업 위기

- BTL방식은 BTO방식에 비해 사업수익률이 낮지만, 건설 관련 위험이 적고<sup>6)</sup> 정부가 총민간 투자비를 직접 지급하여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하지만, 최근의 공사비 급등으로 다수의 교육시설 BTL사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함.
  - 조달청의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단위당 공사비는 201만원(2020년), 217만원(2021년), 270만원(2022년), 280만원(2023년)으로 증가했음.<sup>7)</sup> 2020년~2023년 사이 초중고등학교의 공사비는 무려 39% 증가함.
- 특히, 2021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작되며 첫 고시된 사업들은 물가변동이 가장 컸던

4)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572건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교육시설은 306건으로 사업 규모는 작지만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다음으로 환경(223개), 국방(93개), 도로(69개)분야에서 BTL사업이 추진됨(infrainfo.kdi.re.kr).

5) 대한경제(2023. 12. 29), “BTL 공사비 갈등 봉합될까… 분쟁조정위 조정안 수락 관전”.

6) BTL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기획되며, 공사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도가 낮아 건설 관련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 KDI(2006), “BTL 정부지급금 지급방안 연구”.

7) 조달청,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www.g2b.go.kr:8044/pbs/psa/psa0110/index.do).

시기의 사업비 증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BTL사업은 타당성분석, 국회 제출 및 의결, 고시의 순서로 추진됨. 일반 사업과 달리 BTL사업은 총사업비가 산출되는 타당성분석에서부터 사업이 발주되는 고시일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넘는 긴 기간이 소요됨.
- 그런데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는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인 '가격산출시점'을 타당성분석이 아닌 고시일로 명시해옴.
- 물가변동이 미미했던 시기에는 가격산출시점이 문제 되지 않았으나, 최근 전례 없던 공사비 증가가 발생함. 2021년 12월 고시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의 경우, 타당성분석 시점에서 고시일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무려 17% 상승하였으나, 이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림 1>).

<그림 1> 2021년 고시된 초중고 BTL사업의 가격산출시점 문제



주 : 1) 2021년 12월 고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대표 유형 일정 정리.  
 2) BTL사업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한국은행)로 조정하나, 여기서는 실제 공사비 변동과 밀접한 건설공사비지수로 분석함.

-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22년 12월 고시 사업부터는 가격산출시점을 고시일로 보지 않고, 별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가격산출시점이 고시일인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가 고시 이전 기간의 물가변동 반영을 협의 중에 있음.
- 2021년 12월 고시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은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고시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격이 산출된 시점은 고시 1년 6개월 전임을 감안하여, 폭등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의 공사비 부족 근본 원인

- 물가 급등이 BTL사업의 위기를 촉발했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사업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

저 온 BTL사업이 이렇게 취약해진 근본 원인에는 시설물의 높은 요구성과 그에 맞지 않는 낮은 공사비의 문제가 존재함.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4대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기존 학교시설보다 건축물로서의 성능이 매우 고도화됨.
  - ‘공간혁신’은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를 통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을 조성하는 개념임. 이에 따라, 실시설계단계에서도 사용자 요구 수준이 반영되며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그린학교’는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더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sup>8)</sup>,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이러한 고품질 자재 활용과 관련 설비 증가는 공사비 증가를 가져옴.
  - ‘스마트교실’은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것임. 그린스마트스쿨 운영관리에 적합한 학내전산망 장비가 제공되고, 그 밖에 주차관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테크센터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포함됨.

<표 1> 그린스마트스쿨 주요 추진 내용 및 공사비 영향 요인

그린스마트스쿨 주요 추진 내용		공사비 영향 요인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등 미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용자 니즈 추가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단열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 설치 등	친환경 설비 비용 증가
ICT기반 스마트교실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기반 스마트 교실로 구축	정보통신 설비, 첨단 운영시스템 등의 비용 증가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과 공동 이용	-

## ■ 시설 성능을 고려한 공사비 산정 필요

- 교육재정이 부족한 여건에서 BTL방식은 우수한 품질의 학교시설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앞으로도 BTL방식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

8) 그린스마트스쿨은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자립율 20% 이상~40% 미만)의 성능을 갖춰야 함.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국토부는 가구당(전용 84㎡ 기준)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 추가, 건설업체는 가구당 최소 293만원 이상의 공사비 증가, 대한건축학회는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26~35% 났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제들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 건축물의 성능은 단순 거주 용도에서 나아가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편의, 시설운영의 자동화·효율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이러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은 기존의 시설과 확연히 다르며, BTL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설 성능과 품질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 친환경 성능과 관련하여 건축 기준이 상향되고 있으며,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짐. 공사비에 이러한 성능 수준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교시설 BTL사업의 건설 리스크가 발생함.
- BTL사업의 추진단계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보았을 때, 발주기관이 담당하는 기획단계는 설계와 시공, 20년에 걸친 유지관리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임. 기획의 부족은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음.
  - 기획단계의 부실은 시설의 부실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BTL사업의 각 추진단계에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주무관청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작성도 필요함.
- 또한, BTL사업의 장점을 단지 사업비 절감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시설물 수명 주기 동안의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와 같은 질적 성과를 다른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부터 학교시설 BTL사업이 추진되며 많은 사업정보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축적된 사업 자료를 분석하고, BTL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BTL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시설의 요구성능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시설의 성능과 총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해야 함.
  - 총사업비의 증액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건설 및 운영단계의 금융위험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로 변화한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6~2024.7.)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22대 국회 개원(2024.5.30.) 이후 약 2달이 지난 현재(2024.7.24. 기준)까지 총 2,176건의 법률이 입법 발의됨.
  - 통상 국회가 새롭게 개원하면, 이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 중 상당수를 재발의함과 더불어 총선 과정 공약 사항 등이 개원 이후 2~3달간 입법 집중(다수 발의)되는 것이 일반적임.
- ◎ 기존 국회 개원 시기 건설 관련 법률 또한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입법이 집중되었으나, 이번 22대 국회의 경우 개원 이후 2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예전 대비 제한적인 상황임.

### 이슈 1: 철도지하화 관련 입법 완성 추진, 새로운 건설 물량 창출 물꼬 기대

- ◎ 22대 총선 과정 여·야 모두 현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인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사업추진 관련 공약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제정·시행되어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기(既) 마련됨.
  - 허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서는 적용 대상에 도시철도가 제외되어 있어 서울 및 안산 4호선과 서울 2호선 등 도시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는 결여되어 있던 상황임.
-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유사한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정안이 입법 발의됨(의안번호 제00393호).
- ◎ 철도 및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현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비 미지원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 및 역세권 개발 수익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사항이 많으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건설 물량 창출 차원 환영할 사항임.

### 이슈 2: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최소화 위한 입법 잇달아...

- ◎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됨.
- ◎ 7월 24일 기준 총 4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0544호)은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예방조치 및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 중단 또는 휴식 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함.

- 이와 유사하게 임의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 00550호) 또한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법률을 통해 명확히 부여하는 안임.
  -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해 김위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0786호)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해당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율하는 안을 제시함.
  - 반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00805호)의 경우 기상이변에 노출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안함.
- ◎ 복수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제기된 점과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국회의원의 최초 입법 내용을 기상이변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으로 선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안 마련을 통한 빠른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건설산업의 경우 야외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업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법 개정을 고려한 선제적 관리 대책 마련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기준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이슈 3: 여러 논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되나?

- ◎ 올해 1월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규정이 확대 적용됨.
  - 지난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은 그간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 ◎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 지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찬성하는 측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랫동안 이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져 왔음.
- ◎ 이와 관련하여 임의자 의원 등 국회의원 108명은 확대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금 2년간 유예(2026년 1월 27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제00549호).
- ◎ 노동계의 반대가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여러 산업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행 사항 준비가 부족한 점, 국회의원의 1/3에 해당하는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유예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기존 3년간의 적용 시기 유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였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준비미흡 개선) 마련이 정부와 산업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설산업 주요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5.30.~'24.7.24)

법률명	주요 내용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008호(정성호 의원 등 12인)] ('24.5.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대 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 규모가 커졌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및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구체화(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li> </ul> </li> </ul>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148호(김은혜 의원 등 10인)] ('24.6.5. 폐지법률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 발생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및 재배분을 통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중이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 저하 및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가가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건축의 효율적 추진이 저하되기에 현행법 폐지 필요</li> <li>- (제안방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li> </ul> </li> </ul>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198호(임의자 의원 등 11인)] ('24.6.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 신설</li> <li>- (제안방향②)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 방식 다양화</li> <li>- (제안방향③) 효과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 알선기관의 알선 허용</li> </ul> </li> </ul>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393호(고민정 의원 등 15인)] ('24.6.12. 법률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철도계획 수립 주체 차이 등으로 인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이 제외되었기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한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li> <li>- (주요내용①) 도시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에게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li> <li>- (주요내용②) 도시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li> <li>- (주요내용③) 국토교통부에게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li> <li>- (주요내용④)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 필요 비용의 원활한 조달 지원을 위해 도시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li> <li>- (주요내용⑤)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544호(박정 의원 등 14인)] ('24.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 한파 등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매년 온열 및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이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이유②)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①)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규정(안 제41조의2 등)</li> <li>- (제안방향②)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여(안 제52조의2 등)</li> </ul> </li> </u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549호(임의자 의원 등 108인)] ('24.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중대 산업재해)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li> <li>- (제안방향)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적용을 공포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여 준비 기간을 추가 부여(안 제3조)</li> </ul> </li> </ul>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550호(임의자 의원 등 13인)] ('24.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증대</li> <li>- (제안방향)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li> </ul> </li> </ul>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624호(김영배 의원 등 12인)] ('24.6.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 필요</li> <li>-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1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부여 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li>- (제안방향①) 광역지자체에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는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유도(안 제11조 및 제12조)</li> <li>- (제안방향②)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상향(115% 이하 → 120% 이하)(안 제15조제2항)</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786호(김위상 의원 등 12인)] ('24.6.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유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li> </ul> </li> </ul>
「산업안전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805호(강득구 의원 등 11인)] ('24.6.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 이변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도입(안 제52조제1항)</li> </ul> </li> </ul>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829호(박덕흠 의원 등 11인)] ('24.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 그간 물가상승률과 사업 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기준 상향 조정 필요</li> <li>- (제안방향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 선정(안 제38조)</li> <li>- (제안방향②)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li> </ul> </li> </ul>
「건설기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857호(권영세 의원 등 10인)] ('24.6.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 시작 전 사전 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 공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부재하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민간공사에 대해 인·허가 기관이 설계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li> </ul> </li> </u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954호(김현정 의원 등 14인)] ('24.6.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의 경우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하기에 개정 필요</li> <li>- (제안방향) 「하도급법」 내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 신설을 통해 원도급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하도급자의 신속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0906호(민홍철 의원 등 12인)] (‘24.6.25. 법률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동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부·울·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과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기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li> <li>- (주요내용①)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신속·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7조)</li> <li>- (주요내용②)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 규정(안 제8조~제11조)</li> <li>- (주요내용③) 광역지자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km 범위 내 일정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li> <li>- (주요내용④) 국가에게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70% 이상과 운영비용 전액에 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li> <li>- (주요내용⑤)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선정을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소 지분을 40%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li> </ul> </li> </ul>
<p>「정보통신공사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131호(정부 입법)] (‘24.6.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차원 규제 완화 필요</li> <li>- (제안방향) 정보통신공사업법 양도, 합병 미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업을 영위한 경영자에 대해 법 위반 행위 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규정 완화(안 제74조 및 제78조)</li> </ul> </li> </ul>
<p>「주택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252호(김동아 의원 등 14인)] (‘24.7.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오랫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공동주택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승강기소음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 규제 강화 필요</li> <li>- (제안방향)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 예방 및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 도모(안 제35조제1항제2호)</li> </ul> </li> </ul>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300호(이학영 의원 등 11인)] (‘24.7.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및 임금 구분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공공사와 같은 보호 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공공사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의2 신설 등)</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311호(이학영 의원 등 10인)] (‘24.7.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 포함, 이하 동일)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일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에게 임금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체불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제도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임금 비용 구분지급·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335호(김정호 의원 등 13인)] (‘24.7.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에게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의 경우 이와 같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제1호)</li> </ul> </li> </u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516호(황희 의원 등 11인)] (‘24.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진되는 상황</li> <li>- 이와 더불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RC구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지속</li> <li>- (제안방향)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대란·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며, 내장재 및 골조 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통합을 통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그럼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를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안 제18조의2 신설)</li> </ul> </li> </ul>
「해외건설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518호(조정식 의원 등 11인)] (‘24.7.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중이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시행에 한계 노출</li> <li>- (제안이유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p>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방향)</b> 해외건설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 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개정(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li> </ul>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1818호(채현일 의원 등 28인)] (‘24.7.17.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공정거래법」의 경우 분할 후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현행법(「하도급법」)의 경우 과징금에 대해서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의 규정이 없어 시정조치 전 위법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가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위법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유도(안 제25조)</li> </ul> </li> </ul>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1902호(소병훈 의원 등 11인)] (‘24.7.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기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건설사에게 자발적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이 필요</li> <li>- <b>(제안방향)</b>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li> </ul> </li> </ul>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1915호(오세희 의원 등 10인)] (‘24.7.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①)</b>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우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대해 수탁기업의 피해가 있기에 이를 개선 필요</li> <li>- <b>(제안이유②)</b>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치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해 개선 필요</li> <li>- <b>(제안방향)</b>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안 제2조 및 제21조)</li> </ul> </li> </ul>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안번호: 제01964호(허영 의원 등 16인)] (‘24.7.18. 일부개정 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안이유)</b>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아 지난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중이나,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4단계(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중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이 부재하고 대부분 일반 등급(99%)만을 취득하기에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li> <li>- <b>(제안방향)</b>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li> </ul> </li> </ul>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1992호(소병훈 의원 등 11인)] ('24.7.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을 통해 공사감리원의 일정 자격을 규정 중이나,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 배치 의무화 필요</li> <li>- (제안방향)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li> </ul> </li> </ul>
「공공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069호(위성곤 의원 등 11인)] ('24.7.22. 법률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외국의 경우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학목재 및 목조건축 기술개발이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자원 조건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재 자원을 연료용 및 펄프 또는 보드(board) 재료의 원재료인 목분, 칩 등의 낮은 부가가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 필요</li> <li>- (주요내용①) 산림청은 목조건축을 위한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 생산업의 인정, 등록, 관리, 연구개발·보급, 품질인증제 운영 의무 부여(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li> <li>- (주요내용②) 산림청에게 공공건축물에 활용되는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과 해외교역 확대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안 제15조 및 제16조)</li> <li>- (주요내용③) 공공 발주청에게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 제품의 우선 구매 의무 부여(안 제17조)</li> <li>- (주요내용④) 산림청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와 지역간별재 이용 촉진을 위한 목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권한 부여(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li> <li>- (주요내용⑤) 산림청에게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 이용 촉진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재 이용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 제품 생산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로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li> </ul> </li> </ul>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번호: 제02115호(홍기원 의원 등 11인)] ('24.7.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함.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당 결과에 대해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기에 개선 필요</li> <li>- (제안방향)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 예방·해소 유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제7항 등)</li> </ul> </li> </ul>